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발농업직불금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내 용

광주광역시에서는 발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주요 발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발농업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자, 신청자격, 지급요건 등을 확인하고 관련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최종 직불금을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발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함)로 하며, 다만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발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와 밭농업 재배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자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신청자인 농업인이 직불제 신청 당시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직불제 등록(신청) 농지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면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지 이용여부 등이 충족되지 못하여 실제 재배농지 면적의 합이 1,000㎡ 미만으로 확인된 현장점검 결과를 전산시스템으로 지자체에 전송하였으며, 지자체에서는 그 결과를 확인하고 지급요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밭직불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를 전용 하거나 자기의 소유가 아닌 국·공유지를 임대차 계약없이 무단점유한 자(이하 “국·공유지 임대차 미계약 자”라 한다), 밭농업 재배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서구 등 5개 구에서는 전송된 점검결과에 따라 불이행 및 불일치로 판정된 해당농지에 대해서 직불제 사업대상자 지급 제외요건 중 농지전용 자와 국·공유지 임대차 미계약 자 필지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와 같이 2014년~2016년까지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총 89농가에게 3,503,640원의 밭농업직불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표] 밭농업직불금 부당지급 현황(2014년~2016년)

구분	밭직불금 지급농지 (㎡)			밭직불금 지급내역 (㎡, 원)					재검토결과 회수해야 할 직불금 (㎡, 원)				
	건수	농지 면적	전용 면적	지급면적		지급액			회수대상 면적		회수금액		
				고정	논이모작	계	고정	논이모작	고정	논이모작	계	고정	논이모작
합 계 (A+B)	89	87,184	8,746	29,218	55,682	3,785,150	1,036,180	2,748,970	21,689	55,682	3,503,640	754,670	2,748,970

구분	발직불금 지급농지 (㎡)			발직불금 지급내역 (㎡, 원)					재검토결과 회수해야 할 직불금 (㎡, 원)				
	건수	농지 면적	전용 면적	지급면적		지급액			회수대상 면적		회수금액		
				고정	논이모작	계	고정	논이모작	고정	논이모작	계	고정	논이모작
농지전용 (A)	15	14,763	8,746	13,250	270	540,160	526,660	13,500	8,341	270	343,800	330,300	13,500
국·공유지 (B)	74	72,421	-	15,968	55,412	3,244,990	509,520	2,735,470	13,348	55,412	3,159,840	424,370	2,735,470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서구청장, 남구청장, 북구청장, 광산
구청장은

[시정] 농지전용, 국·공유지 임대차 미계약 등 지급대상이 아닌 농업인에게 지급된 발농업직불금 3,503,640원을 회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